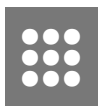


---

# 2012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저술출판지원사업 신청요강

---

2012. 1.



## 주요사항 요약

| 구분              | 2011                                                                    | 2012                                                                                              | 비고 |
|-----------------|-------------------------------------------------------------------------|---------------------------------------------------------------------------------------------------|----|
| 지원예산            | ① 총예산: 5,300백만원<br>- 신규: 2,170백만원(212과제 내외)<br>- 계속: 3,130백만원(310과제 내외) | ① 총예산: 5,300백만원<br>- 신규: 1,220백만원(107과제 내외)<br>- 계속: 3,580백만원(358과제 내외)<br>- 고전번역발간: 500백만원(별도추진) |    |
| 지원분야            | ① 인문저술지원<br>② 저술성과확산                                                    | ① 저술지원(구 인문저술지원)<br>② 저술성과확산                                                                      |    |
| 지원대상            | ①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br>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규정<br>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실적이<br>있는 연구자에 한함 | ① 『학술진흥법』 제6조 규정에<br>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실적이 있<br>는 연구자에 한함                                                |    |
| 지원분야<br>[신규과제]  | ① 인문사회 전 분야<br>(예술·체육학 분야 포함)                                           | ① 좌동                                                                                              |    |
| 지원규모<br>[연/과제당] | ① 인문저술지원 : 연간 10백만원<br>② 저술성과확산 : 총 15백만원                               | ① 좌동<br>② 좌동                                                                                      |    |
| 지원기간            | ① 인문저술지원 : 3년<br>② 저술성과확산 : 2년                                          | ① 좌동<br>② 좌동                                                                                      |    |
| 평가절차<br>[신규과제]  | ① 요건심사→전공심사(패널심사)<br>→종합심사                                              | ① 요건심사→전공평가<br>(온라인+PM Review)→종합평가                                                               |    |
| 연구결과<br>보고서     | ① 연구종료 후 1년 이내                                                          | ① 좌동                                                                                              |    |
| 연구결과물<br>제출     | ① 연구종료 후 2년 이내<br>- 출판완료 도서 2부<br>- 저술완성분량 : 300쪽 이상                    | ① 좌동                                                                                              |    |
| 추진일정            | ① 신규과제(1회 공모)<br>- 1월 공고/3~4월 평가/5월 지원<br>- 연구개시 : 5. 1                 | ① 좌동                                                                                              |    |



# 차 례

|                                |    |
|--------------------------------|----|
| <b>I. 사업목적 및 사업개요</b>          |    |
| ■ 사업목적 .....                   | 1  |
| ■ 지원근거 .....                   | 1  |
| ■ '12 중점 추진방향 .....            | 1  |
| ■ 기대효과 .....                   | 2  |
| ■ 추진일정 .....                   | 2  |
| <b>II. 지원내용</b>                |    |
| ■ 예산 .....                     | 3  |
| ■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            | 3  |
| ■ 지원유형 .....                   | 3  |
| ■ 연구개시 .....                   | 3  |
| <b>III. 신청</b>                 |    |
| ■ 신청자격 .....                   | 4  |
| ■ 신청기간 및 방법 .....              | 5  |
| ■ 신청절차 .....                   | 5  |
| ■ 신청 및 참여제한 .....              | 8  |
| <b>IV. 평가 및 선정</b>             |    |
| ■ 평가단계 .....                   | 0  |
| ■ 평가항목 및 배점 .....              | 0  |
| ■ 평가절차 및 내용 .....              | 0  |
| ■ 선정 및 협약체결 .....              | 1  |
| <b>V. 연구비 관리</b>               |    |
| ■ 연구비 지급 .....                 | 1  |
| ■ 연구비 관리 .....                 | 2  |
| <b>VI. 연구과제 관리</b>             |    |
| ■ 평가유형 및 내용 .....              | 3  |
| ■ 결과보고서 및 최종결과물 제출 .....       | 9  |
| ■ 연구성과 관리 .....                | 6  |
| <b>VII. 기타</b>                 |    |
| ■ 간접비 지급 .....                 | 7  |
| ■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   | 7  |
| ■ 기타 참고사항 .....                | 7  |
| [붙임1] 평가항목 및 배점 .....          | 19 |
| [붙임2] 연구계획서 양식 .....           | 21 |
| [붙임3] 연구이력소개서 양식 .....         | 22 |
| [붙임4] 대표업적요약문 양식 .....         | 23 |
| [붙임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양식 ..... | 24 |

## 1. 사업목적

- 오랜 연구경험을 축적한 우수한 인문학자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저술발간 지원
- 연구성과의 확산 및 소통성을 제고하여 한국 인문학의 수준 향상에 기여

## 2.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3조 및 제5조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 3. '12 중점 추진방향

- 인문사회분야 학문적 특성을 반영하여 '논문' 작성 중심의 연구에서 '저술' 중심 연구로의 전환 기반 마련
  - ※ 개인연구 사업의 연구결과물 성과 반영에서 '저서'의 반영 비율을 200%로 산정
- 저술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과제 선정과 계속과제 관리의 차별적 운영
  - ※ 신규과제 : 인문학과 사회의 소통, 학문간 소통 등을 강조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인문학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연구과제 선정
  - ※ 계속과제 : 원고의 양적·질적 성과, 차년도 저술계획, 출판 가능성 등 평가
- 인문사회분야 연구 성과 도출 및 사업추진의 효과성 제고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을 수행한 연구과제 중, 기존의 연구성과를 수정·보완하여 저술출판 계획을 갖고 있는 우수과제 지원
  - 기존 연구성과를 확장하고 새로운 연구결과가 반영된 학술전문저술 지원
    - ※ 개론서(교과서, 개설서 등) 수준의 비학문적 성격의 저술 계획, 기 발표 내용이 30% 이상 포함된 계획은 지원대상 아님
- 다년과제의 경우 연구기간에 대한 평가를 강화(연구주제 성격상 다년연구가 필요한 경우만 인정)

## 5. 기대효과

- 우수 저술 지원을 통해 인문학·사회과학의 사회적 활용 및 학문적 소통 증진
- 기 발표된 논문 성과를 저술로 출판함으로써 연구성과 확장 및 대중성 확보

## 6. 추진일정

| 일 정       | 추진 내용                                                               |
|-----------|---------------------------------------------------------------------|
| 2012. 1월  | - 2012년도 저술출판지원사업 시행계획 확정.시행                                        |
| 2012. 2월  | - 신규과제 신청 접수<br>- '11선정 계속과제 연차보고서 접수(1단계보고서)-1,2차 선정               |
| 2012. 3월  | - 신규과제 선정평가<br>- '11선정 계속과제 연차평가 실시                                 |
| 2012. 4월  | - 신규과제 선정평가<br>- '09선정 계속과제 연차보고서 접수(2단계보고서)-1차 선정                  |
| 2012. 5월  | - 신규 및 계속과제('11년도 선정) 연구개시<br>- '09선정 계속과제 연차평가 실시                  |
| 2012. 6월  | - 연구진행 관리                                                           |
| 2012. 7월  | - '09선정 계속과제 연구개시                                                   |
| 2012. 8월  | - 연구진행 관리                                                           |
| 2012. 9월  | - '09선정 계속과제 연차보고서 접수(2단계보고서)-2차 선정                                 |
| 2012. 10월 | - '11선정 계속과제 연차보고서 접수(1단계보고서)-3차 선정<br>- '09선정 계속과제 연차평가 실시 - 2차 선정 |
| 2012. 11월 | - '11선정 계속과제 연차평가 실시 - 3차 선정                                        |
| 2012. 12월 | - '11선정 계속과제 연구개시                                                   |

## II

## 지원내용

### 1. 예산

(단위:과제/백만원)

| 구분          |        | 예산액   | 지원예정 과제수 | 비 고 |
|-------------|--------|-------|----------|-----|
| 신규과제        | 저술지원   | 770   | 77       |     |
|             | 저술성과확산 | 450   | 30       |     |
|             | 소 계    | 1,220 | 107      |     |
| 계속과제(저술지원)  |        | 3,580 | 358      |     |
| 고전 번역.발간 지원 |        | 500   | -        |     |
| 합 계         |        | 5,300 | 465      |     |

※ 교과부 「초·중등 독서 활성화 방안」 관련 학생 눈높이에 맞는 고전 번역.발간 지원(500백만원 고전번역원 위탁 수행)은 추후 별도 추진

※ 신규과제 선정은 '유형별 지원계획'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유형별 신청과제수 및 선정율을 고려하여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2.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 지원분야 : 인문사회 분야(예술 · 체육학 포함)
- 지원대상 : 「학술진흥법」 제6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 3. 지원유형

- 저술지원 : 인문사회분야 연구자의 저술활동 지원
- 저술성과확산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을 통해 기 수행한 과제의 결과물(논문 등)이 저술 발간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 구분   | 저술지원     | 저술성과확산  |
|------|----------|---------|
| 지원규모 | 연간 10백만원 | 총 15백만원 |
| 지원기간 | 3년       | 2년      |
| 연구개시 | 5.1      | 5.1     |

※ 기 수행한 과제의 연구결과물이 '저술'인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저술지원 : 2년 연구기간으로 조기종료 가능하되, 3년차 연구비 미지급

### 4. 연구개시

- 연구개시일 : 2012년 5월 1일

## 1. 신청자격

- 「학술진흥법」 제6조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자로서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되고 다음과 같은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이어야 함

2007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급, A&HCI급·SSCI급, SCOPUS급) 학술지>, 등록 완료된 국제특허 또는 전문학술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등의 **연구 실적이 5편 이상 이어야 함**

- 단독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편으로, 공동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함
- 단, 상기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시에 입력하여야 함

### ※ 「학술진흥법」 제6조

제6조(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연구자 중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게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연구자 또는 대학등은 학술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자 또는 대학등으로부터 보고받은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추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협약의 체결 및 제3항에 따른 결과의 보고·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저술성과확산 분야 : '12년 이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을 수행한 연구과제 중, 기존의 연구성과를 수정·보완하여 저술출판 계획을 갖고 있는 우수 연구자

## 2. 신청기간 및 방법

### 가. 신청기간

- 연구자 신청 : 2012. 2. 16(목), 14:00 ~ 2. 22(수), 18:00까지
- 기 관 확 인 : 2012. 2. 23(목), 14:00 ~ 2. 24(금), 18:00까지

###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제출서류

※ 계획서 내에 저술완성 분량을 예상하여 제시하여야 함 (300페이지 이상, 제한없음)

※ HK교수의 경우 본 연구가 1)HK 연구소의 아젠다를 연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과 2)HK 연구소의 아젠다 연구 수행과 평가(본 연구로 인한 연구결과물은 HK 연구소의 연구결과물로는 인정하지 않음)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HK 연구소장의 의견서(자유양식)를 반드시 첨부하여야함

#### 가) 저술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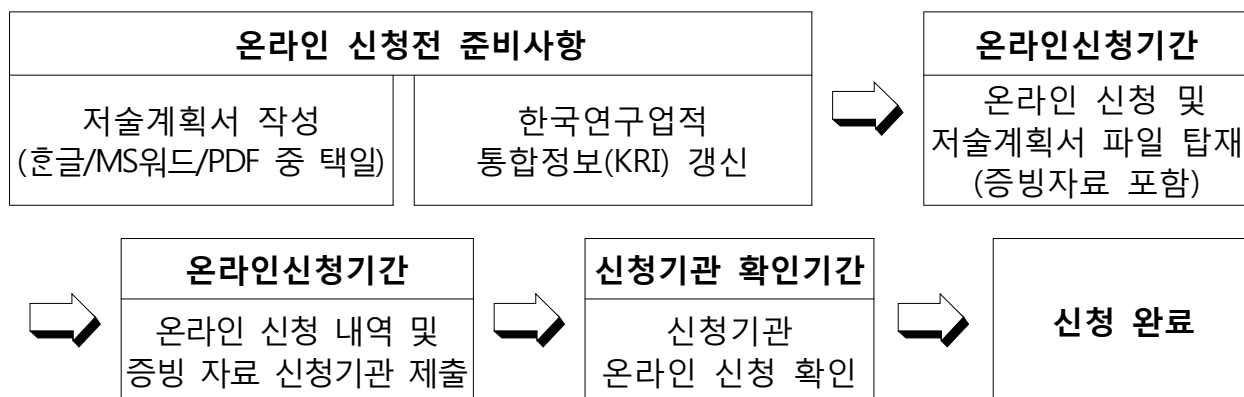
- 저술계획서(출판계획 포함) : A4 5~10페이지
- 연구이력소개서 및 대표업적요약문, 양식 참고

#### 나) 저술성과확산

- 저술계획서(출판계획 포함) : A4 5~10페이지

- 소속기관 확인 : 연구비중앙관리부서에서 신청내역 확인 후 승인

## 3. 신청절차





## 가. 온라인 신청 전

- 1) 연구참여자는 재단 홈페이지 정보서비스→연구기반정보→「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KRI)」에서 본인의 정보(연구업적 등)를 입력, 수정하여야 함 (신청 후 추가 등록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 취소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함)

※ KRI 정보 갱신 시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 등 필수 입력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신청 전 사전 확인). 정보 공개 여부는 반드시 공개로 설정

- 2)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 자격으로서 연구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함
- 3) 온라인 신청 시 연구계획서 파일을 동시에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한글」, 「MS워드」, 「PDF」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단의 소정 양식으로 미리 작성하여야 함 (PDF 파일 권장)
- 4) 시간강사는 사전에 신청기관을 정하여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와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 전·후 원활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5) 신청과제의 평가분야 및 담당 학문단은 연구분야분류표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연구분야분류표 확인 : 재단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사업마당→연구분야분류표 →학술연구분야

※ 연구분야 및 평가관련 사항은 해당 학문단으로 문의

## 나. 온라인 신청

- 1) 연구자는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작성한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여야 함(접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만 볼 수 있음)
- 2) 연구책임자의 대표업적은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연구실적 중 5편을 선택하여야 함
  -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급, A&HCI급·SSCI급, SCOPUS급)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 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여야 함

- 3)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 마감일 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 교체 및 수정한 후에는 신청완료 버튼을 반드시 다시 클릭해야함  
(클릭하지 않았을 경우는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 4) 온라인 신청 및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과제번호는 신청 마감 이후에 일괄적으로 부여됨(접수번호와 과제번호는 다름)

-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기 전 『인쇄-미리보기』에서 1쪽씩만 보이는지 확인한 후 탑재함(『인쇄-인쇄방식』을 ‘자동인쇄’로 바꾼 후 저장)

-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탑재함(연구계획서와 별도 분리, 양식은 붙임 참조)

## 다. 온라인 신청 후

### 1) 연구책임자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입력내용(계획서 및 관련자료 일체) 1부를 출력하여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 제출

### 2)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산학협력단 등)

-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신청 입력내용 1부를 제출받고 기한 내에 신청기관 확인을 완료해야하며, 확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되지 않음

## 4. 신청 및 참여제한

### □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

- “상반기 공모 사업” 내에서는 1과제만 신청 가능
  - ※ 학문후속세대(박사후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신진연구자지원, 중견연구자지원, 저술출판지원,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지원 중 1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로 인하여 현재 제재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대학·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에 소속된 자는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 자격으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7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 ※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본 사업에 인건비를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기간만료일이 2012. 12. 31. 이전인 경우는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 기 수행 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을 중지하고 신규지원 연구비에서 지원

## □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3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하며, 인건비는 중복 수혜할 수 없음

\* 상기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관련 1인 3과제 참여기준의 범위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과제 관리규칙」과 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적용 사업의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함

- 단,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 만료일이 2012. 12. 31 이전인 과제는 참여제한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기간 만료일이 2013. 1. 1. 이후인 과제라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 개발 연구과제(정책주제형 대학중점연구소과제 포함),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 개인연구(우수논문지원, 우수학자지원사업), 소규모연구회지원사업, 인문주간 및 강좌 지원의 과제(시민인문강좌, 상설인문강좌), 학제간 융합연구지원(산학협력형, 융합연구총괄센터), 사회과학연구지원(SSK네트워킹지원, 사회과학 성과.홍보확산지원, 사회과학중장기 Agenda 개발지원) 등은 참여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

-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박사후 국외연수 지원사업 수혜자는 연구기간(지원기간)이 본 사업과 중복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 참여제한은 연구비 신청 시에도 적용될 수 있음. 즉, 신청한 과제(연구자)가 선정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참여제한에 저촉되면 신청 불가

\* 연구비 지급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연구비 신청 이후에라도 조치사항이 발생 혹은 확인되면 최종선정에서 제외

## 1. 평가단계

| 단계별 | 심사구분     |           | 심사내용                                    | 비 고   |
|-----|----------|-----------|-----------------------------------------|-------|
| 1단계 | 요건심사     |           |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br>(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 재단    |
| 2단계 | 전공<br>평가 | 온라인평가     |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평가                         | 전공평가단 |
|     |          | PM Review | 온라인 평가 결과 검토                            | PM    |
| 3단계 | 종합평가     |           |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 종합평가단 |

## 2.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1] 참조

## 3. 평가절차 및 내용

### 가. 제 1 단계 :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 나. 제 2 단계 : 전공평가

- 평가방법: 온라인평가 + PM Review
  - 온라인평가 : 온라인으로 전문가에 의한 개별 평가
  - PM Review : 해당 학문분야 PM이 전공평가 결과를 검토하는 제도(평가자 간 점수 격차에 대한 보완 및 검증 등)
- 평가내용 :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우수성 등
-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1] 참조

## 다. 제 3 단계 : 종합평가

- 평가주관 : 종합평가단
- 평가내용
  -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 ※ 평가결과 최종 점수 7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 4. 선정 및 협약체결

- 예비선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과제를 공개하여 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
- 최종선정 :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
- 협약체결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자 3자간 연구비 협약 체결

### V

## 연구비 관리

### 1. 연구비 지급

#### ☐ 지급방법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장(주관연구기관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지급
-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은 과제별 협약 체결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함
- ※ 다년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는 연차평가 후 지원 결정된 연구비 지급
- ※ 연구비는 원고료로 지급하되 관련세법을 준수하여 계좌이체함

## 1) 저술지원

| 구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
|              |          |                            | (1)지급         | (2)집행                         |
| 평가<br>(자료제출) | 신규선정     | 연차평가<br>(연구개시 후<br>10개월 내) | -             | 연차평가<br>(연구개시 후<br>2년 10개월 내) |
| 지급시기         | 협약체결 후   | 계속지원<br>결정시                | 3년차<br>연구개시 후 | 출판적합<br>판정시                   |
| 지급규모         | 10,000천원 | 10,000천원                   | (10,000천원)*   | 10,000천원**                    |

\* 3년차 연구개시 후, 연구자 소속기관의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지급

\*\* 출판적합 판정 시, 산학협력단에 기지급한 연구비에 대해 집행을 승인

## 2) 저술성과확산

| 구분           | 1년차 연구비                | 2년차 연구비                 |
|--------------|------------------------|-------------------------|
| 평가<br>(자료제출) | 신규선정                   | 연차평가<br>(연구개시 후 22개월 내) |
| 지급시기         | 협약체결 후                 | 출판 적합 판정시               |
| 지급규모         | 3,500천원*<br>(15,000천원) | 11,500천원                |

\* 1년차 연구비 지급시 총 연구비 11,500천원을 선 지원하되, 착수금 3,500천원만 집행하고 차년도 평가 후 잔액을 집행토록 함

# 2. 연구비 관리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이 중앙관리

※ 동 사업 연구비는 원고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세부 정산은 생략함

## 1. 평가유형 및 내용

### □ 단계보고서 제출 및 평가

#### ● 저술지원

##### 가. 1단계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제출시기 : 연구개시 후 10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1단계보고서(작성 원고 포함)
  -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온라인입력)
- 평가시기 : 1단계보고서 접수 후 차년도 연구개시 전
- 평가내용
  - 1단계 저술 진행상황 및 2단계 연구추진계획
  -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
- 평가방법 : 온라인 평가, 평가항목은 붙임2 참조
- 평가결과 활용 : 계속지원 여부 결정
  - 계속지원 : 2년차 연구비 지급
  - 지원중단 : 2년차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고 향후 2년간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신청 제한

##### 나. 2단계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제출시기 : 연구개시 후 2년 10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2단계보고서 및 80% 정도 완성 원고



- 평가시기 : 2단계보고서 접수 후 연구기간 종료 전
  - 평가내용
    - 2단계 저술 진행상황 및 출판 등 향후 추진계획
    -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
  - 평가방법 : 패널평가, 평가항목은 붙임2 참조
  - 평가결과 활용
    - 출판적합 : 3년차 연구비를 지급하고 출판 추진
    - 출판유보 : 6개월간의 수정 기간을 주어 재평가
    - 출판부적합 : 3년차 연구비 지급 중지, 향후 5년간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신청 제한
- ※ 출판유보의 경우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 저술성과확산

### 가. 단계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제출시기 : 연구개시 후 22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단계보고서 및 80% 정도 완성 원고
  - 평가시기 : 단계보고서 접수 후 연구기간 종료 전
  - 평가내용
    - 저술 진행상황 및 출판 등 향후 추진계획
    -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
  - 평가방법 : 패널평가, 평가항목은 붙임2 참조
  - 평가결과 활용
    - 출판적합 : 2년차 지원비를 지급하고 출판 추진
    - 출판유보 : 6개월간의 수정 기간을 주어 재평가
    - 출판부적합 : 2년차 연구비 지급 중지
- ※ 출판유보의 경우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2. 결과보고서 및 최종결과물 제출

### 가.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자료
    - 저술완성원고(파일 탑재)
    - 저술요약문(국·영문, 온라인 입력)
      - ※ 연구요약문은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제출
    - 저술결과 개요보고서(온라인 입력)
    - 출판계약서 사본(스캔파일 탑재)
      - ※ 저서 출판을 위한 출판사 선정은 저자의 선택에 위임
    - 연구성과 및 연구성과물 등의 정보입력
-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 제출된 연구결과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http://www.nrf.re.kr))를 통해 PDF 형태로 공개 가능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부정행위 사례(예: 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나.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 제출시기 :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 제출방법 : 온라인 및 우편 제출
- 제출자료 : 출판 완료 도서 2부

- 사사표기 : 출판완료 도서에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

| 연구결과발표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                                                                                                                                    |
|--------------------------------|------------------------------------------------------------------------------------------------------------------------------------|
| 국문표기 시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선정연도-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
| 영문표기 시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선정연도-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

※ 연구결과발표물 사사표기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이 아닌 타기관 일부 지원 병기표기를 허용함

## 다.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미제출시 제재

- 연구결과 및 연구결과물 관련 의무 미이행 과제는 「학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처리

※ 세부 제재 조치기준은 향후 「학술진흥법 시행령」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개정 후 별도 공지

## 3. 연구성과 관리

-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물 제출 후에라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및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을 탑재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성과물을 송부하여야 함

\* 연구성과물은 연구성과 중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을 포함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단,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예: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4조에 따라 연구성과물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함

- 국회도서관, KERIS, NTIS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KRM)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원문, 음성, 동영상, 이미지 등) 서비스 제공 등
- 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 VII

## 기타

### 1. 간접비 지급

- 해당사항 없음

### 2.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 '14.12.31.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11.12.7. 발표)에 따라 단계적인 조치를 위해 사업별로 신청 자격 및 결과물 제출에 사용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기준을 '13년부터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술지”로 변경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

### 3. 기타 참고사항

- 신청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신청자(연구책임자)는 심사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에 심사결과와 관련된 심사의견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심사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거,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아연구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은 배아 연구기관으로의 등록과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얻어야 함에 따라,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아연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문 의 처

### □ 한국연구재단([www.nrf.re.kr](http://www.nrf.re.kr))

- 사업 및 신청요강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지원팀 : 042-869-6203, 6130, 6306, 6307, 6309, 6134

- 사업총괄기획 및 규정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총괄기획팀 : 042-869-6103, 6102

- 전공평가 관련 문의

- 어문학분야 : 042-869-6391 ~ 3

- 역사철학분야 : 042-869-6245 ~ 6

- 법정상경분야 : 042-869-6301 ~ 2

- 사회과학분야 : 042-869-6083 ~ 4

- 문화융복합분야 : 042-869-6136 ~ 7 (예술체육·융복합분야)

- 전산 관련 문의(온라인신청, 연구업적통합정보, 전산장애)

- 정보팀 Help Desk : 1544-6118

## 1. 신규과제 평가

### ● 저술지원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비고 |
|--------------|---------------------|-----------------------------------|----|
| 저술계획<br>(40) | 독창성<br>(20)         | · 연구주제의 창의성 및 독자성<br>· 저술 규모의 적정성 |    |
|              | 학문발전<br>공헌도<br>(20) | · 학문의 파급효과<br>· 해당분야연구의 선도적 역할    |    |
| 연구역량<br>(60) | 연구역량<br>(50)        | · 최근 5년간 연구활동의 질적 수준              |    |
|              | 주제 관련성<br>(10)      | · 연구역량과 주제와의 관련성                  |    |

### ● 저술성과확산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비고 |
|--------------|----------------------|------------------------|----|
| 저술계획<br>(40) | 타당성<br>(20)          | · 저술 계획의 구체성 및 규모의 적정성 |    |
|              | 연계성<br>(20)          | · 연구성과와 저술계획의 연계성      |    |
| 연구성과<br>(60) | 연구성과의<br>우수성<br>(40) | · 기 수행 연구성과의 우수성       |    |
|              | 공헌도<br>(20)          | · 해당 학문분야에서의 파급효과      |    |

## 2. 단계보고서 평가

### ● 저술지원

#### <1단계 보고서>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
| 기 수행 연구실적    | · 연구수행의 당초목표대비 진도실적                                           |
| 향후 연구계획 및 내용 | · 기 수행 연구내용과의 연관성<br>· 차년도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br>· 최종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

#### <2단계 보고서>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
| 80% 완성 원고에 대하여<br>출판적합 여부 평가 | · 학문발전 공헌도<br>· 타학문에 대한 파급효과<br>· 가독성, 통일성 |

### ● 저술성과확산

#### <단계 보고서>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
| 80% 완성 원고에 대하여<br>출판적합 여부 평가 | · 학문발전 공헌도<br>· 타학문에 대한 파급효과<br>· 가독성, 통일성 |

# 저 술 계 획 서

신청분야 : 저술지원( ) 저술성과확산( )

※ 신청 해당사업에 ○ 표 하여 주십시오

|       |     |  |
|-------|-----|--|
| 연구과제명 | 국 문 |  |
|       | 영 문 |  |

※ 아래 사항은 참고하신 후 삭제하시고 작성하십시오.

※ 저술계획은 서식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참조하여 자유롭게 기술 하십시오.

※ 저술계획서(출판계획 포함)는 **A4 용지 5~10매** 내외로 작성하십시오.

(참고문헌목록은 용지 매수에서 제외, 총 용량(Size)은 10MB 이내)

※ 저술완성분량(**300p 이상**)을 예상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저술완성원고 제출 시 당초계획분량을 초과한 경우는 무방하나, 부족할 경우 10% 범위에 한하여 오차 허용

※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Review)로 진행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파일명 및 파일내용에 신청자를 알아 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참고문헌 목록에 있어 본인이 저자인 경우 본인표기는 무방합니다.**

## 1. 저술계획

## 2. 출판계획

※ 출판사 선정기준 및 계획, 예상되는 출판 추진일정 등을 기술

## 3. 예상 저술 분량

## 4. 기타사항



## 연구이력소개서

※ 본인 연구의 주요 경향 등을 업적 중심으로 기술 하십시오.

※ 1페이지 이내로 작성 하십시오. (휴면명조 12포인트 기준)

## 대 표 연 구 업 적 요 약 문

|                   |  |      |                    |         |        |
|-------------------|--|------|--------------------|---------|--------|
| 구분 <sup>1)</sup>  |  | 발행년도 |                    | 게재권호(집) | 권 호(집) |
| 연번 <sup>2)</sup>  |  | 학술지명 |                    |         |        |
| 제 목 <sup>3)</sup> |  |      |                    |         |        |
| 역 할 <sup>4)</sup> |  |      | 공동저자 <sup>5)</sup> |         | 명      |

■ 초록(abstract) 또는 요약문 (특허의 경우 출원일, 출원국가 및 내용 등을 기재)

※ 업적요약문과 업적전문에 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기재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성명, 소속 등).

※ 신청서 화면에서 대표업적으로 지정한 5편은 모두 대표연구업적요약문을 작성하시고, 5편 중 2편은 전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 출판파일 이외에 연구자가 소유한 원문 파일 탑재 가능)

※ 대표연구업적 요약문 및 대표업적 전문의 총 용량(Size)은 10MB 이내로 제한합니다. 용량이 초과되는 경우 오프라인 제출 또는 용량 확대 등이 불가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선택한 연구업적 5편에 대하여 각각 작성함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기재하지 않음

- 1) 구분 : 논문, 저서, 역서, 학술지, 외국특허 중 택일하여 기재
- 2) 연번 :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대표 연구업적에 대하여 각각 연번 부여하여 작성함 (1~5번)
- 3) 제목 :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 제목
- 4) 역할 : 주저자, 공동저자 중 택일하여 기재
- 5) 공동저자 : 본인포함(단독일 경우 기입하지 않음)

## 개 인 정보 제 공 및 활 용 동 의 서

본인은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는 연구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연구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단의 연구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2년      월      일

### ☐ 본 인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_\_\_\_\_  
 자택전화                      \_\_\_\_\_                      휴대전화                      \_\_\_\_\_  
 e-mail                      \_\_\_\_\_  
 직 장                      \_\_\_\_\_                      직 위                      \_\_\_\_\_  
 직장전화                      \_\_\_\_\_                      팩 스                      \_\_\_\_\_

### ☐ 참여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 구 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서 명 |
|-------|-----|--------|-----|
| 참여연구원 |     |        |     |
| 참여연구원 |     |        |     |
| 참여연구원 |     |        |     |
| 연구보조원 |     |        |     |
| 연구보조원 |     |        |     |
| 연구보조원 |     |        |     |
|       |     |        |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귀하